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9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한기호·백종헌·신성범

김은혜 • 박해철 • 김기웅

구자근 • 정성호 • 주진우

김용태·조은희·김 건

이종배 · 최수진 · 이만희

김승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, 전시·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 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, 유족 연금,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9 조).

법률 제 호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군인이 사망한 후 「군인사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 ① | 제9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 ① |
|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| |
|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| |
| 이 속하는 달의 「군인연금 | |
| 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| |
| 기준소득월액(이하 "기준소득 | |
| 월액"이라 한다)을 기초로 한 | |
| 다. <u><단서 신설></u> | <u>다만, 군인이 사망한 후</u> |
| | 「군인사법」 제30조제1항에 |
| |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 |
| | 월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|
| | 바에 따라 진급된 계급을 기준 |
| | 으로 산정한다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